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92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218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9205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최지현

변론종결 2023. 4. 11.

판결선고 2023. 4. 25.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20. 9. 4. C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C로부터 3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20년 제806호).

이후 D는 2022.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전액 양도하고 2022. 7. 26.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나. C는 2020. 12.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익자를 C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1	C	2003. 03. 31.	2003. 03. 3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2	피고	2018. 04. 09.	2018. 04. 05. 신탁
3	C	2018. 05. 10.	2018. 05. 10. 신탁재산의 귀속
4	피고	2018. 05. 25.	2018. 05. 24. 신탁
5	C	2020. 12. 29.	2020. 12. 23. 신탁재산의 귀속
6	피고	2020. 12. 29.	2020. 12. 29. 신탁(이 사건 신탁계약)

한편, C는 2020. 12. 29. F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조합에게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 소유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전라남도 장성군 H 답 878㎡와 전라남도 장성군 I 답 1000㎡(2필지 총 감정가액 45,828,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2020. 12. 29. 기준 총 383,033,000원의 채무를 부담 중이었다.

라. 관련 사건

J(C의 채권자)는 2021. 3. 30. C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2537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2021.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20. 9. 4.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므로, 위탁자가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에서 이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C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요청에 따라 C로 등기를 이전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곧바로 피고에게로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 부동산에 있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C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갖게 되는 수익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C와 피고 사이 신탁과 재산신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이례적인 상황인 점(C로서는 신탁과 재산신탁을 필요에 따라 반복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본 관련 사건에서 C의 또 다른 채권자 J 역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다만, J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절차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등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도 하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